

의안번호	2211098
의 퇴 인	윤한홍의원
회 답 일	2025.8.25.
추계번호	25D3394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 지급, 의료 지원, 요양지원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57억 9,100만원(연평균 71억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험작전참여수당		4,272	4,922	5,610	6,221	6,907	27,932	5,586
의료지원	보훈병원	224	233	242	252	263	1,214	243
	위탁병원	1,094	1,136	1,179	1,224	1,270	5,903	1,181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6	6	6	7	7	32	6
보훈재가복지서비스		110	126	143	157	174	710	142
합계		5,706	6,422	7,180	7,861	8,621	35,791	7,1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위험작전참여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는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하며, 다른 보훈급여금과는 병급을 금지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 (의료지원)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1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2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9조 (양로지원)	65세 이상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4	안 제10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4조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함(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1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 (위험작전참여수당)	○	—
2	안 제8조 (의료지원)	○	—
3	안 제9조 (양로지원)	×	양로지원 시설로 보훈원을 운영(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인원과 상관없이 매년 양로지원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위험지역 참여군인이 추가 입소하더라도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10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
5	안 제14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
6	안 제1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	고궁 등을 이용할 위험작전 참여군인의 수, 고궁·공원의 요금 감면율 차이, 고궁·공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금액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위험작전 참여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추계에서는 65세 이상 위험작전 참여군인에게 지급되는 위험작전참여수당을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수준으로 가정함
 - 다만, 작전 직후 생존하였으나 그 후 제대한 군인의 경우 생존 여부 및 보훈급여금 수급 여부를 알 수 없어 위험작전 참여 직후 생존자 전원이 2025년 7월 기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위험작전 참여군인의 보훈급여금 수급 여부는 확인이 곤란하여 고려하지 않음
- 또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지원 시, 비상이 국가유공자인 무공수훈자의 지원조건(60% 감면)에 준하여 추계하며, 수진횟수 및 감면단가는 60% 감면대상자 전체의 평균값을 적용함
- 요양지원의 경우, 65세 이상 위험작전 참여군인 수에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등급 인정률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수를 산정하였으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무공·보국 수훈자 대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수를 산정함
- 양로지원의 경우, 양로지원 시설로 보훈원을 운영(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인원과 상관없이 매년 양로지원비를 정액으

로 지원하고 있어,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추가 입소하더라도 추가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

- 고궁 등을 이용할 위험작전 참여군인의 수, 고궁·공원의 요금 감면율 차이, 고궁·공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금액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추계대상에서 제외
-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험작전 참여군인 현황

- 제정안은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포격전, 천안함 피격사건, 십자성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7개 작전을 위험작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에 따르면, 제정안에서 위험작전으로 규정한 7개 작전에 참여한 군인 수는 4,462명이며, 이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7년 이후 65세 이상인 참여군인 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다만, 작전 직후 생존하였으나 그 후 제대한 군인의 경우 생존 여부 및 보훈급여금 수급 여부를 알 수 없어 위험작전 참여 직후 생존자 전원이 2025년 7월 기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위험작전 참여군인의 보훈급여금 수급 여부는 확인이 곤란하여 고려하지 않음
 -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8조¹⁾는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을 구분하여

1)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8조(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①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전투경력 :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작전명령에 따른 전투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목적으로 지원 행위를 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단 평시에는 국지도발 등에서 적과 직접적으로 교전행위를 한 인원으로 한정한다.
2. 명예로운 경력 :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한 다음 각 목의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 가. 작전지원 : 적과 교전한 아군을 직접 지원한 인원 중에게 타의 귀감이 되는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
 - 나. 살신성인 : 임무수행 간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인원 중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 다. 충성 및 헌신 : 자발적 전역보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행위, 범법자 체포 등 타의 귀감이 되

관리하고 있으나, 추계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위험작전 참여군인 전체를 제정안 적용 대상으로 가정함

[표 2] 위험작전 참여군인 현황 및 연도별 65세 이상 참여군인 수 추정

(단위: 명)

	구분	전체 참여군인 수	65세 이상				
			2027	2028	2029	2030	2031
제1연평해전	전투경력	1,110	74	81	87	94	98
	명예로운 경력	914	302	338	361	375	390
	계	2,024	376	419	448	469	488
제2연평해전	전투경력	426	13	14	16	17	19
	명예로운 경력	42	10	10	13	14	16
	계	468	23	24	29	31	35
대청해전	전투경력	413	1	2	3	3	3
	명예로운 경력	68	1	5	10	12	14
	계	481	2	7	13	15	17
천안함 피격사건	전투경력	104	0	1	2	2	2
	명예로운 경력	3	1	1	1	1	1
	계	107	1	2	3	3	3
연평도 포격전	전투경력	—	—	—	—	—	—
	명예로운 경력	—	—	—	—	—	—
	계	778	8	8	8	8	8
아덴만 여명작전	전투경력	289	2	2	6	9	10
	명예로운 경력	46	9	12	15	15	19
	계	335	11	14	21	24	29
십자성작전	전투경력	—	—	—	—	—	—
	명예로운 경력	—	—	—	—	—	—
	계	269	269	269	269	269	269
합계	전투경력	—	—	—	—	—	—
	명예로운 경력	—	—	—	—	—	—
	계	4,462	690	743	791	819	849

주: 보훈급여금 수급 여부 및 생사는 확인할 수 없어, 위험작전 참여 직후 생존자 전원이 2025년 7월 기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보훈급여금 수급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방부

나. 위험작전참여수당 지급(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는 행위 또는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인원과 파병인원, 기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선정한 주요 국방정책 이행에 직접 기여한 인원에게 부여하는 경력

□ 위험작전참여수당은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

[표 3]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증가율
월 지급액	320	340	350	390	420	450	7.1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1%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위험작전참여수당 월지급액을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4] 위험작전참여수당 월 지급액 추정: 2027~2031년

(단위: 천원,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증가율
월 지급액	516	552	591	633	678	7.1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65세 이상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수준의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5] 위험작전참여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월 지급단가(천원)	516	552	591	633	678	-
지급대상(명)	690	743	791	819	849	-
지급액(백만원)	4,272	4,922	5,610	6,221	6,907	27,9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보훈병원 의료지원(안 제7조제1항)

□ 제정안에 따라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보훈병원에서의 진료 시 비상이 국가유공자인 무공수훈자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진료비의 6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최근 5년간 보훈병원 진료실적(60% 감면진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액(A, 백만원)	45,807	48,323	48,629	53,878	60,623
진료연인원(B, 명)	727,393	750,428	728,030	801,171	818,852
의료지원대상자(C, 명)	1,309,021	1,305,069	1,304,985	1,308,232	1,311,691
수진횟수(B/C, 회)	0.6	0.6	0.6	0.6	0.6
진료단가(A/B, 원)	62,974	64,394	66,795	67,249	74,035

자료: 국가보훈부

- 진료단가는 2024년 진료단가에 최근 5년간 진료단가 인상률 4.1%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수진횟수는 최근 5년간 수진횟수 평균 0.6회를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보훈병원 진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진료대상(명)	4,462	4,462	4,462	4,462	4,462	—
수진횟수(회)	0.6	0.6	0.6	0.6	0.6	—
진료단가(원)	83,520	86,944	90,509	94,220	98,083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224	233	242	252	263	1,2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위탁병원 의료지원(안 제7조제2항)

- 제정안에 따라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탁병원에서의 진료 시 비상이 국가유공자인 무공수훈자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진료비의 6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가정

[표 8] 최근 5년간 위탁병원 진료실적(60% 감면진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액(A, 백만원)	9,822	8,498	10,730	11,656	12,683
진료연인원(B, 명)	452,198	419,460	440,479	512,214	503,248
의료지원대상자(C, 명)	44,674	50,190	52,836	58,544	63,054
수진횟수(B/C, 회)	10.1	8.4	8.3	8.7	8
진료단가(A/B, 원)	21,721	20,261	24,360	22,756	25,202

자료: 국가보훈부

- 진료단가는 2024년 진료단가에 최근 5년간 진료단가 인상률 3.8%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수진횟수는 최근 5년간 수진횟수 평균 8.7회를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9] 위탁병원 진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진료대상(명)	4,462	4,462	4,462	4,462	4,462	—
수진횟수(회)	8.7	8.7	8.7	8.7	8.7	—
진료단가(원)	28,186	29,257	30,368	31,522	32,720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1,094	1,136	1,179	1,224	1,270	5,9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안 제10조)

- 65세 이상 위험작전 참여 군인 중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11.3%를 적용하여 대상인원을 산출
- 지원단가는 2024년 1인당 지원단가에 최근 5년간 지원단가 증감률 1.6%를 적용하여 추정

[표 10] 요양지원 보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상인원	77	83	87	92	95	—
지원단가	0.071	0.072	0.073	0.074	0.075	—
추가재정소요	6	6	6	7	7	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안 제14조)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무궁(보국)수훈자 중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최근 5년간 지원을 평균 3.8%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인원을 산출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상인원을 65세 이상으로 가정함

[표 11] 최근 5년간 무공·보국 수훈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실적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전체 무공·보국 대상자	38,843	38,950	39,026	38,961	39,059	38,968
서비스 지원자	1,751	1,564	1,394	1,231	1,433	1,475
지원율	4.5	4.0	3.6	3.2	3.7	3.8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2]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자 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위험작전 참여 군인 (65세 이상)	690	743	791	819	849
서비스 지원자	26	28	30	31	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4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단가에 최근 5년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단가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지원단가를 산정

[표 13] 최근 5년간 무공·보국 수훈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지원단가	2.7	2.7	3.2	3.4	3.5	6.4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4]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 증가율
지원단가	4.2	4.5	4.8	5.1	5.4	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5]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지원대상	26	28	30	31	32	—
지원단가	4.2	4.5	4.8	5.1	5.4	—
추가재정소요	110	126	143	157	174	71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 지급, 의료 지원, 요양지원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57억 9,100만원(연평균 71억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험작전참여수당		4,272	4,922	5,610	6,221	6,907	27,932	5,586
의료지원	보훈병원	224	233	242	252	263	1,214	243
	위탁병원	1,094	1,136	1,179	1,224	1,270	5,903	1,181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6	6	6	7	7	32	6
보훈재가복지서비스		110	126	143	157	174	710	142
합계		5,706	6,422	7,180	7,861	8,621	35,791	7,1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에서는 65세 이상 위험작전 참여군인에게 지급되는 위험작전참여수당을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수준으로 가정하고, 작전 직후 생존하였으나 그 후 제대한 군인의 경우 생존 여부 및 보훈급여금 수급 여부를 알 수 없어 위험작전 참여 직후 생존자 전원이 2025년 7월 기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보위험작

전 참여군인의 보훈급여금 수급 여부는 확인이 곤란하여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결과로, 위험작전참여수당의 수준 및 위험작전 참여군인 수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